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13

발의연월일: 2022. 6. 7.

발 의 자: 김선교·강기윤·김상훈

김영식 · 김예지 · 안병길

양금희 • 윤상현 • 이종배

조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우리나라 농업·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·환경보전·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,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,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(농가인구·고령화율:('11) 3백만명,33.7%→('21) 2.2백만명,46. 8%).

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.

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, 조합 법인지방소 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(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67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계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 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---- 2024년 12월 31일 ----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 · 영어자금 · 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
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
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
<u>2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끝나는
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저
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
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
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저
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
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
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
세율로 한다.

제167조(조합법인	등에	대한	법
인지방소득세 과	세특려	])	
		<u>4</u>	202
<u>4년 12월 31일</u>			